Good 충주
Chungju

충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충 주 시
www.cj100.net

目　次

Ⅰ. 총　　칙

1. 목　　적 3

2. 적용대상 3

3. 적용범위 3

4. 용어의 정의 4

Ⅱ.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1.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5

2. 자연감시를 위한 설계기준 5

3.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6

4.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7

5.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8

6.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8

Ⅲ. 아파트단지 설계기준

1. 단지외부 공간 8

1.1 단지 출입구 8

1.2. 공원 및 녹지 9

2. 부대시설 9

2.1. 주차장 9

2.2. 경비실(관리사무소) 10

2.3. 담장 11

2.4. 옥외배관 11

2.5. 승강기 11

3. 복리시설 12
3.1. 어린이 놀이터 12
3.2. 유치원(보육시설) 12
3.3 주민운동시설 13
4. 주 동 13
4.1. 주동출입구 13
4.2. 복도·계단 14
4.3. 세대 내부 14
5. 기 타 15
5.1. 자전거 보관소 15
5.2. 분리수거장 15

Ⅳ.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 설계기준

1. 주택주변 16
2. 출입구 및 창문 16
3. 옥외배관 17
4. 조 명 17
5. 담 장 17
6. 골 목 길 18
7. 주 차 장 18

충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Ⅰ. 총　　칙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아파트단지

① 신축 아파트단지

②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단지

③ 리모델링단지

2.2.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

①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②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③ 가로 및 주차장, 공원 및 녹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정비하는 경우

3.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구도심지역의 낙후 주거지역 계획 및 설계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지역의 범위는 주거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며, 주거지역 내의 가로 및 주차공간, 공원 및 녹지,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개공지(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다.

3.1.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주거단지 또는 신규 주거단지 계획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주거형식의 유형, 빈발범죄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충주시의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한다.

4. 용어의 정의

4.1.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주거 및 도시공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적 공간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2. "자연감시"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설계개념으로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의 공적공간에 대해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시켜 주민에 의한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 및 시설을 배치하는 방어적 공간 설계를 의미한다.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4.3. "접근통제"는 사람들의 출입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범죄기회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설계개념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을 말한다.

4.4. "영역성"은 잠재적인 범죄인에게 영역감을 인식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으로, 조경, 담장, 표지, 바닥의 재질 및 색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4.5. "활동의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개념으로 일정 지역에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시설, 공원 및 휴게시설, 상가 등을 계획해 주어 주민간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4.6. “명료성 강화”는 주민이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을 말한다.

4.7. “유지관리”는 시설물 또는 구조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으로, 주민이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지속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1.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1.1. 해당 지역 및 특정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예측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공간계획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연감시를 위한 설계기준

2.1. 건물의 현관이나 주차공간의 경우 주변에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조명과 방범시설을 계획한다.

2.2. 건물 출입구, 승강기 홀, 계단 홀, 외부와 면한 창문 및 계단 등은 개방형 구조로 디자인한다.

2.3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격 공간 등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보행로는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5. 야간에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명은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 골목,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의 조명설계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2.6.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7. 주택가 도로 주변에 소매점, 편의점과 같은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한다.

2.8. 주택가 막다른 골목은 시점에서 종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가급적 일직선으로 계획한다.

2.9. 주거단지의 모든 도로와 골목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3.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3.1.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공간의 성격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3.2.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가로 바닥재의 재질, 색채, 포장상태 등을 차별화하고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시각, 촉각, 청각 등을 통해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지역의 특성 및 성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4. 영역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울타리, 각종 표지판, 조경 식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3.5. 야간에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역성 확보에 유익한 조경 및 조명계획을 한다.

3.6. 주택주변 또는 골목의 자투리 공간은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을 조성하여 영역성을 강화한다.

3.7. 건축물의 형태(외관), 재료 및 색채 등을 통일하여 영역성을 확보한다.

4.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4.1. 주택단지 또는 주동의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2.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3. 사적영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나 투시형 담장, 수목 등의 조경시설을 계획한다.

4.4.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과 침입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상징물 및 시설을 계획한다.

4.5. 건물의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게 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6. 건축물의 외벽에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범시설과 함께 설치한다.

4.7. 외부와 면한 문이나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여 침입 시도시 일정시간 버틸 수 있도록 한다.

4.8. 주택과 주택사이에 형성되는 이격공간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5.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5.1. 사람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 각종 시설(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디자인하고 시설물과 각각의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2. 이용자들의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5.3. 골목길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유도한다.

6.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6.1. 공공공간 또는 공공시설물이 최초 계획된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손쉬운 디자인을 한다.

6.2. 유지관리의 미흡과 소홀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계획한다.

6.3.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파손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Ⅲ. 아파트단지 설계기준

1. 단지외부 공간

1.1. 단지 출입구

① 주출입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② 주출입구의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출입구와 연결되는 차도와 보도의 조명은 충분히 밝게 설치한다.

④ 주출입구의 위치는 단지에 접한 도로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연감시가 쉽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뛰어난 곳으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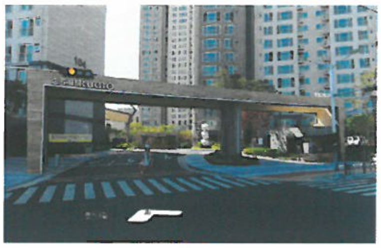

<영역의 위계가 명확한 출입구 설계>

1.2. 공원 및 녹지

①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한다.

② 수목의 식재로 인해 외벽에 면한 창문을 가리거나,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③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식재하여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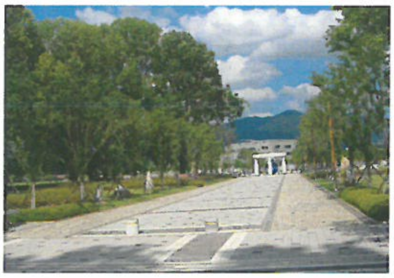

<보행로 시야확보를 고려한 식재>

<주동주변 가시성 확보를 위한 조경>

<저층세대 프라이버시 확보계획>

2. 부대시설

2.1. 주 차 장

① 주차장은 접근통제시설(경비실, 차단기)이나 보안설비(CCTV, 비상벨 등)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진입차로와 주차구획을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⑥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지하주차장의 경우 출입구 인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⑧ 지하주차장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계획한다.

⑨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위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경수 식재를 지양하고, 보행로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시야확보 계획>

<썬큰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계획>

<지하주차장 조명계획>

<CCTV 계획>

<지하주차장 비상벨 계획>

<지하주차장 동선계획>

2.2. 경비실(관리사무소)

① 경비실은 단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실은 필요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③ 경비실에 통합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3면 이상 조망 및 시야확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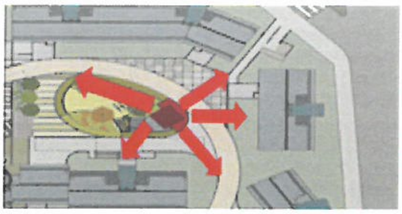

<단지 전체가 조망 가능한 배치계획>

<24시간 통합 방범모니터링 시스템>

2.3. 담　　장

① 주민에 의한 감시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주민에 의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담장 또는 키작은 관목 등의 조경수로 계획한다.

③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가 낮은 밀생 수종 또는 사계절 수종을 조밀하게 식재한다.

④ 적절한 간격으로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는 충분히 밝게 계획한다.

<투시형 담장 계획>

<투시형 울타리 계획>

<적절한 조명 간격 계획>

2.4. 옥외배관

①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가스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외부인이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건물외부의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에 의한 자연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옥외배관 계획>

2.5. 승강기

① 주동 현관 입구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②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한다.

③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한다.

④ 승강기 홀과 승강기 홀과 접한 복도, 계단실은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승강기 투시형 출입문 계획>

<승강기 내부 CCTV 설치>

<주동현관입구에서 승강기가 보이도록 계획>

3. 복리시설

3.1. 어린이 놀이터

①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주동 출입구 주변,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어린이 놀이터에 울타리 설치 시 투시형 담장 또는 키 작은 관목류를 사용하여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어린이 놀이터 배치계획>

<어린이 놀이터 식재계획>

<어린이 놀이터 조명계획>

3.2. 유치원(보육시설)

① 단지 내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의 출입구는 외부로부터 감시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단지 내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은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계획한다.

③ 시야확보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유치원에 부속된 놀이터의 경우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낮은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

<유치원(보육시설) 계획>

3.3 주민운동시설

① 운동시설은 단지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며,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

②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범죄행동을 가리거나 시야차단이 되지 않도록 낮은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

<주민운동시설 계획>

4. 주　　동

4.1. 주동출입구

① 주동 출입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한다.

② 각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조망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주동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주동 출입구로 향하는 보행로 부분에는 사각지대(건물, 조경, 시설물 등에 의한)가 없도록 하며, 외진 공간을 거쳐서 진입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주동 입구 계획>

4.2. 복도·계단

① 각 층 계단실, 복도에 CCTV 설치를 고려한다.

② 계단실은 외부 공간 및 마주보는 세대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외부로 면한 창호를 설치한다.

③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에 안전, 피난, 경고 안내판, 비상벨을 설치한다.

④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를 굴곡 없이 직선으로 계획한다.

<계단실 계획>

<복도계획 주간>

<복도계획 야간>

4.3. 세대 내부

① 세대 현관문(경첩, 문, 잠금장치)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신문·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② 세대 내의 외부로 면한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외벽, 특히 저층부의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스배관, 창 등)의 설계 시 방어적 설계 개념을 도입한다.

<세대 내 유비쿼터스 시스템>

<세대 내 비상상황 모니터링>

<저층세대 방범센서 설치>

5. 기 타

5.1. 자전거 보관소

① 자전거 보관대는 주동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와 보호아래 있게 한다.

② 지하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 부근에 투시형으로 하여 주민에 의한 보호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③ 조명시설을 통해 야간에도 자연적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전거 보관소 계획>

<지하 주차장 내 자전거 보관소 계획>

5.2. 분리수거장

① 분리수거장은 주동 주출입구 주변 및 시선의 방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② 분리수거장은 투시형 또는 키작은 관목으로 계획하여 주민들의

통행로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분리수거장의 형태 및 재료는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한다.

<자연감시가 가능한 배치계획>

<자연감시가 가능한 투시형 계획>

<유지관리가 원활한 운영계획>

Ⅳ.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 설계기준

1. 주택주변

1-1.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1-2.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공원이나 화단 등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1-3. 주택주변은 야간에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는 보안등을 설치한다.

1-4. 주택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1-5. 빈집이나 폐가는 주민휴게공간이나 감시초소 등으로 정비하여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바닥 디자인을 통한 영역의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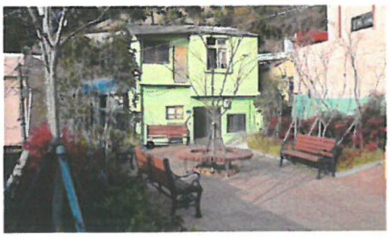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한평공원>

2. 출입구 및 창문

2-1. 대문·현관 등 건물의 출입구는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계획을 한다.

2-2. 주거침입 범죄의 주경로가 되는 출입문, 외부로 면한 창 등은 일정 수준의 방범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 외기에 면한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2-4. 골목길에 면한 외벽창문은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을 설치하고,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범시설을 설치한다.

3. 옥외 배관 등

3-1. 주택 외벽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3-2.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3-3. 주택에 부속된 창고·차고는 발코니·창문 등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안전하도록 계획한다.

4. 조 명

4-1. 주택가 골목 등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는 보안등을 설치한다.

4-2.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키가 낮은 유도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4-3. 가로등의 경우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4-4. 출입구 및 창문 등 범죄자의 침입이 가능한 곳에 부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담　　장

5-1.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한다.

5-2. 담장이나 벽면 등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적 특징을 고려한 밝은 분위기의 도색을 권장한다.

6. 골 목 길

6-1. 골목길에는 보행자를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6-2. 골목길은 보행자에게 충분한 전방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하며, 고립된 공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급적 직선으로 계획한다.

6-3.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며, 시민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6-4. 골목길 내의 전봇대나 담장, 출입문 주변에는 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6-5. 골목길 내의 자투리 공간 등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또는 주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골목 시야 확보>

<보차 분리 계획>

<친근한 색채계획>

7. 주 차 장

7-1. 주택가의 주차장은 주민에 의한 자연감시가 이루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7-2. 바닥의 재질과 디자인을 달리하여 공간의 영역성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계획한다.

7-3.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통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